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19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12월 18일  
제 안 자 : 교육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의 이해도를 높이고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조항의 표기 및 명칭을 수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“1.5억원” 을 “1억 5천만원” 으로 수정함(안 제15조제1항제1호).
- “학교평생교육위원회” 를 “평생교육자문위원회” 로 수정함(안 제17조 제목).
- “학교평생교육위원회” 를 “평생교육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 라 한다)” 로 수정함(안 제17조제1항).
- “학교평생교육위원회” 를 “자문위원회” 로 수정함(안 제17조제2항, 제5항 및 제6항).
- “위원회” 를 “자문위원회” 로 수정함(안 제17조제3항)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5조제1항제1호 중 “1.5억원” 을 “1억 5천만원” 으로 한다.

안 제17조의 제목 “학교평생교육위원회” 를 “평생교육자문위원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학교평생교육위원회” 를 “평생교육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 라 한다)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학교평생교육위원회” 를 “자문위원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회” 를 “자문위원회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“학교평생교육위원회” 를 각각 “자문위원회” 로 한다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

평생교육위원회를 둔  
다.

(이하 “자문위원회”  
라 한다)-----.

② 학교평생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제안된 의견이 실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자문위원회 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## 1. 서울특별시교육청

1. -----  
-----

## 2. 시민 참여형 평생교육 추진 방향

2. -----  
-----

### 3. 학교 · 지역문화 개발 및 발전 방향

3. -----  
-----

## 4. 세대별 · 계층별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

4. -----  
-----

5. 그 밖에 평생교육 진  
흥과 관련하여 교육감  
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 
는 사항

5. \_\_\_\_\_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.

③ 자문위원회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  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
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

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시민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1. 서울특별시교육감  
소속 공무원

2. 초·중등 교육법 제  
2조의 학교 및 평생교  
육법 제31조의 평생교  
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  
생

3. 제2호의 학교 및 평  
생교육시설에 근무하  
는 교직원

4. 제2호의 학교 및 평  
생교육시설 재학생의  
학부모

5. 그 밖에 평생교육전  
문가 및 시민으로 교육  
감이 필요하다고 인정  
하는 사람

⑤ 학교평생교육위원  
회는 연1회 이상 개최  
하여야 한다.

⑥ 학교평생교육위원  
회 임기는 2년으로 하  
되 연임할 수 있다. 다  
만, 졸업 등으로 신분

⑤ 자문위원회 -----  
-----.

⑥ 자문위원회 -----  
-----  
-----.

을 상실하는 경우 당연  
사임되며 위원의 사임  
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  
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 
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  
간으로 한다.

⑦ 수당에 관하여는 제  
13조를 준용하고 위촉  
직 위원의 구성에 관하  
여는 제10조제6항을 준  
용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⑦ (개정안과 같음)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「양성평등법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
제15조제1항제1호 중 “1억원” 을 “1억 5천만원” 으로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학교의 장이 민간에 위탁하여” 를 “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” 로, “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” 를 “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20조로 하고,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평생교육자문위원회) ① 교육감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평생교육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제안된 의견이 실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정책 방향

2. 시민 참여형 평생교육 추진 방향

3. 학교·지역문화 개발 및 발전 방향

4. 세대별·계층별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

5.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시민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1.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

2. 초·중등 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

3. 제2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직원

4. 제2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의 학부모

5. 그 밖에 평생교육전문가 및 시민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자문위원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
⑥ 자문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졸업 등으로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당연 사임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⑦ 수당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

10조제6항을 준용한다.

제18조(종전의 제17조)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1. 운영비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(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) ① 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육감에 등록한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

2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은 「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원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~ ⑤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10조(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</u> <u>는 「양성평등법기본법」 제21조제2</u> <u>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</u> <u>여야 한다.</u>
제15조(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)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가 생명·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. 1. 1인당 배상금액 <u>1억원</u> 이상 2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	제15조(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 1. ----- <u>1억 5천만원</u> --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6조(학교의 평생교육) ① · ② (생 략) <u>③ 학교의 장이 민간에 위탁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시설의 관리 및 운영, 사용료 징수 등은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u> ④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16조(학교의 평생교육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-----</u> ----- ----- <u>「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</u>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	제17조(평생교육자문위원회) ① 교육감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참여를 확

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 
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 
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평생교  
육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  
라 한다)를 둔다.

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 
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  
육감은 제안된 의견이 실행되도록  
노력하여야 한다.

1.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정책  
방향

2. 시민 참여형 평생교육 추진 방향

3. 학교 · 지역문화 개발 및 발전 방  
향

4. 세대별 · 계층별 평생교육 활성화  
방안

5.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  
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
사항

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  
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  
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 
은 위원들이 선출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
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  
촉하거나 임명한다. 이 경우 위원의  
2분의 1 이상은 시민 등 외부위원으  
로 위촉하여야 한다.

1.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

2. 초·중등 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

3. 제2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직원

4. 제2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의 학부모

5. 그 밖에 평생교육전문가 및 시민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자문위원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
⑥ 자문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졸업 등으로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당연 사임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⑦ 수당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.

### 제17조(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)

① 교육감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학습비

2. · 3. (생 략)

② (생 략)

### 제18조(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)

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운영비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18조 (생 략)

제19조(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) ①

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 
따라 교육감에 등록한 학교형태 장  
애인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를  
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 
수 있다.

1.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  
생교육

2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  
정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  
하여 필요한 사업비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집  
행은 「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 
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20조 (현행 제18조와 같음)